

경상북도체육회 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체육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체육회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체육회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정부·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체육회 운영계획과 예산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규정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각종 규정 등에 의하여 체육회 각종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6. 그 밖에 체육회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체육회장은 제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및 의안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면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01.01.일 부터부터 시행한다.